

대전광역시 올림피아기념 국민생활관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2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7. 8. 31.

발 의 자 : 김인식의원 외 7인

1. 제안이유

스포츠 여가활동의 대중화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, 나아가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올림피아기념 국민생활관의 수영장 시설 이용 여성에 대하여 생리기간만큼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등의 감면조항에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할인을 받고자 하는 여성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(안 제10조제2항제10호).

나. 여성 수영회원 중 생리를 하는 여성에 대하여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

(2) 찬성의원 서명

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,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9호의 사용료는 100분의 50, 제10호의 사용료는 월 회원 사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사용료등의 감면) ①~② (생략) 1.~9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③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,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9호의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	<p>제10조(사용료등의 감면) ①~② (현행과 같음) 1.~9. (현행과 같음) 10.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입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</p> <p>③ ----- ----- -----, 제10호의 사용료는 월 회원 사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.</p>

